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뉴저지 주법에 따른 공공 수용 시설물 성희롱 보호 규정

-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LAD)은 공공 수용 시설물에서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가지 형태인 성희롱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공 수용 시설물이란 학교, 대학, 사업장, 식당, 여름 캠프, 정부 건물 및 병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 2 성희롱에는 외설적인 언어나 모욕적인 표현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같은 신체적 성희롱, 또는 포르노와 같은 사진, 만화, 또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시각적 성희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가해자가 대학교수나 의사와 같은 공공 수용 시설물의 직원이거나 학생 또는 상점의 다른 손님과 같이 공공 수용 시설물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이거나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 3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대가성(quid pro quo) 성희롱 및 적대적 직장 환경 조성. 대가성 성희롱은 특정한 혜택(예를 들어, 더 좋은 성적이나 상점에서 할인 제공)을 조건으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성적 행위를 거부할 경우 부정적 결과(예를 들어, 학교 운동부 팀원에서 제외시키거나 의학적 치료 거부)가 있을 것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대적 환경은 성별에 기초한 원치 않는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각하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 또는 모욕적인 주거 환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4 공공 수용 시설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 학생이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피해 학생의 로커에 붙여놓은 사실을 피해 학생이 보고했다면, 학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가한 사실을 병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병원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공공 수용 시설에서는 성희롱에 반항하거나, 성희롱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LAD에 따라 보장된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은 종업원의 성희롱 행위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강제로 퇴장시킬 수 없으며 교사는 다른 학생이 가한 성희롱 행위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NJ DIVISION ON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02/24/21